

은행은 근담보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 담 보**

## 근담보권설정계약서

(채권담보용)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1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감대조

채 권 자	겸		
근 담 보 권 자	주 소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①
채 무 자	주 소		①
근담보권설정자	(담 보 제 공 자)		①
주 소	주 소		①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담보권 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 근담보권의 설정**

근담보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의 "근담보채권 목록" 란에 기재한 채권(이하 "근담보채권"이라 합니다)에 다음 내용으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채권근담보권을 설정합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두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근담보권실행의 비용, 근담보채권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근담보채권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 기타 부채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는 근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b>특정근담보</b>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 하는 모든 채무					
20	년	월	일자		약정서
20	년	월	일자		약정서



-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담보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제3조 채권담보등기와 존속기간

- ① 설정자와 채권자는 본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담보등기를 하기로 하며, 채권자는 근담보권 존속기간을 2, 3, 4, 5년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년을 존속기간으로 하기로 합니다.
- ② 채권자와 설정자는 근담보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의 갱신을 위한 연장등기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 ③ 설정자가 존속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설정자의 귀책사유로 연장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출기간의 연장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인정하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 제4조 근담보채권에 대한 명시 의무 등

- ① 설정자는 담보제공시 다음 사항에 대해 반드시 채권자에게 명시하고 채권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가. 근담보채권의 채권자여부
  - 나. 근담보채권의 양도사실, 양도금지 특약 및 담보설정금지 특약 없음
  - 다. 근담보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상계 및 기타 대항력 없음
  - 라. 기타 근담보채권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여부
  - 마. 매출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근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동산담보권의 존재 여부
- ② 위 명시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때 또는 명시내용을 입증할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때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 ③ 설정자가 명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근담보채권에 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설정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 제5조 목록과 실제의 불일치 등

근담보채권의 실제가 이 계약서 끝부분 근담보채권 목록란의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 제6조 회보와 조사

- ① 설정자는 근담보채권의 현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합니다.
- ② 채권자는 근담보채권 현황조사를 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설정자의 영업소를 방문하여 설정자의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채권자의 요청시 영업기밀 등 정당한 사유 외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채권자가 근담보채권의 현황에 관하여 서면으로 회보를 요청할 경우 설정자는 채권자가 지정한 양식의 서면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채권자가 요청한 기일까지 제출하기로 합니다.
- ④ 설정자가 제출한 서면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설정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⑤ 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취득할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 설정자는 근담보채권의 발생 및 변제현황 등을 채권자가 지정하는 기한 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채권자와 설정자가 협의한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7조 담보가치의 유지 등

- ① 설정자가 근담보채권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포기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 ② 설정자는 공사의 부실, 납품의 불합격 등 설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 또는 수송 도중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1조의 근담보채권의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 보상금, 보험금, 매각대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④ 근담보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거나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설정자는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8조 근담보권의 실행 등**

- ①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 근담보권을 실행하거나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근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직접 청구에 의한 경우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 후에도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은 설정자 또는 근담보채권의 제3취득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근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근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합니다.

**제9조 근담보채권 회수 등**

- ①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 한 설정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근담보채권의 변제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정자는 근담보채권의 변제기 일 전에 채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설정자는 제1항의 근담보채권 변제금액의 수령권한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며, 채권자는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근담보채권의 변제금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 의 관계**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 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제11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2조 기타 특약사항**

	설정자	(인)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3. 채권자임 4~7. 없음 등 )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3. 근담보채권의 채권자입니까?	
4. 근담보채권에 양도사실 또는 계약상 양도금지 특약이나 담보설정금지 특약이 있습니까?	
5. 근담보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상계 및 기타 대항력이 있습니까?	
6. 근담보채권에 관한 기타 다른 권리가 있습니까?	
7. 매출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근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동산담보권이 있습니까?	

■ 근담보채권 목록 (개별채권담보용) (1)

대상목적물의 표시				
필수기재사항	일련번호		1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계약	
	개별채권	발생연월일	년	월 일
	채권자 (판매기업)	법인명/성명		
		주 소		
	채무자 (구매기업)	법인명/성명		
주 소				
선택기재사항	변 제 기 일			
	채 권 총 액			
	기 타 사 항			

■ 근담보채권 목록 (개별채권담보용) (2)

대상목적물의 표시				
필수기재사항	일련번호		2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계약	
	개별채권	발생연월일	년	월 일
	채권자 (판매기업)	법인명/성명		
		주 소		
	채무자 (구매기업)	법인명/성명		
주 소				
선택기재사항	변 제 기 일			
	채 권 총 액			
	기 타 사 항			

■ 근담보채권 목록 (개별채권담보용) (3)

대상목적물의 표시				
필수기재사항	일련번호		3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계약	
	개별채권	발생연월일	년	월 일
	채권자 (판매기업)	법인명/성명		
		주 소		
채무자 (구매기업)	법인명/성명			
	주 소			
선택기재사항	변 제 기 일			
	채 권 총 액			
	기 타 사 항			

■ 근담보채권 목록 (집합채권담보용) (1)

대상목적물의 표시					
필수기재사항	일련번호		1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계약		
	집합채권	시 기	년	월	일
		종 기	년	월	일
	채권자 (판매기업)	법인명/성명			
주 소					
채무자 (구매기업)	법인명/성명				
	주 소				
선택기재사항	변 제 기 일				
	채 권 총 액				
	기 타 사 항				

■ 근담보채권 목록 (집합채권담보용) (2)

대상목적물의 표시					
필수기재사항	일련번호		2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계약		
	집합채권	시 기	년	월	일
		종 기	년	월	일
	채권자 (판매기업)	법인명/성명			
주 소					
채무자 (구매기업)	법인명/성명				
	주 소				
선택기재사항	변 제 기 일				
	채 권 총 액				
	기 타 사 항				

■ 근담보채권 목록 (집합채권담보용) (3)

대상목적물의 표시						
필수기재사항	일련번호	3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계약				
	집합채권	시 기	년	월	일	
		종 기	년	월	일	
	채권자 (판매기업)	법인명/성명				
		주 소				
채무자 (구매기업)	법인명/성명					
	주 소					
선택기재사항	변 제 기 일					
	채 권 총 액					
	기 타 사 항					

\*채권의 종류

연번	명 칭	연번	명 칭
1	부동산매매대금채권	13	보관료채권
2	동산매매대금채권	14	치료채권
3	기타 매매대금채권	15	전세금반환채권
4	부동산담보대출채권	16	보험금채권
5	금융기관대출채권	17	보험료채권
6	신용카드대금채권	18	중개료채권
7	기타 대여금채권	19	운송료(운임)채권
8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	리스료채권
9	차입채권	21	지식재산권이용료채권
10	공사대금채권	22	진료비채권
11	기타 수급인의 보수채권	23	서비스이용료채권
12	수입료채권	24	기타 채권

## 담보제공자(근담보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채권근담보권이란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담보약정에 따라 채권을 목적으로 등기한 근담보권으로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전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전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전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전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